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일시 | 2019.7.22(월) 오후2시

장소 | 제일빌딩 3층(종각역 8번출구)

주최 |  바른사회
CITIZENS ASSOCIATION FOR BETTER SOCIETY

순서

■ 사회

-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발제

-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변호사)
* 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위원장
-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 토론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폐회

■ 목 차 ■

■ 발 제

일제 강제동원 재판과 한일갈등 문제의 해결 방안..... 9

- 박 인 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변호사)

* 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반일 역사관의 뿌리..... 37

- 김 용 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 토 론

- 김 상 검 (동국대 법학과 교수) 47

- 정 인 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52

- 조 경 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5

■ 정책토론회

발제

- 박인환 바른사회 공동대표/변호사
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위원장
-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일제 강제동원 재판과 한일갈등 문제의 해결방안

박 인 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변호사

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위원장

1. 최근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 (대법원 2018.10.30.선고 2013다61381 판결)

가.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0 2018. 10. 30.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4명이 신일철주금(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7.10.선고 2012나44947 판결)을 확정함.

0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신일철주금(주)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므로 기속력이 없고, 일본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피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함.

0 또한 그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철주금 측이 이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0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별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음.

*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음.

*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법을 취해

야 한다는 것임

(두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지급이라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임)

0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8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한·일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판단함.

<1965년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 및 주요 내용>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4조(a)의 규정 취지에 따라, 1951년 말경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에 국교정상화 및 전후 보상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되었다가 마침내 1965. 6. 22.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의 하나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이 체결됨.

가) 청구권협정 제1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청구권자금 제공]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

나) 청구권협정 제2조 [청구권협정의 효력과 성격]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우시에 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 (a)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으로서 제2조에 열거하는 지역에 있는 것과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함)으로서 실제로 이들 지역에 시정을 행하고 있는 당국 및 그 주민(법인을 포함함)에 대한 것의 처리와 일본국에서 이들 당국 및 주민의 재산과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이들 당국 및 주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함)의 처리는 일본국과 이들 당국 간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

*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주요 내용 발췌)

-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제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e) 동조 3.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각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 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항목**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가 포함되어 있음

다) 청구권협정 제3조 [분쟁의 해결방법]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나.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의 경과

0 위 대법원 재상고사건 판결이 있기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주) 및 신일철주금(주)을 상대로 강제동원 등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2012. 5. 24.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던 바, 동 판결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및 2009다68620 판결)

0 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7년과 15년 만에 선고된 대법원 최초의 판결로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임(우리나라에서도 판결 선고시까지 12년과 7년이 걸림)

0 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일제 말기(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용 되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주)이 운영하던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 노무자로 배치되거나, 오사카에서 구 일본제철(주)이 운영하던 제철소에 노무자 등으로 배치되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감시와 폭행 등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강제노동으로 혹사당하였다가 해방으로 귀국한 다음 근 50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지루한 법정투쟁을 시작함.

-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피해자 5명)

1995. 12. 11. 일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소송 제기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1999. 3. 25. 원고청구 기각 판결(소멸시효완성 등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2000. 5. 1. 부산지방법원 소 제기
 2005. 1. 19.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2007. 2. 2. 부산지법 원고청구 기각 판결(2000가합7960판결)
 2007. 11. 1.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확정)
 2009. 2. 3. 부산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2007나4288)
 [부산고법은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

- 신일철주금 상대 소송(피해자 4명)

1997. 12. 24.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 소송 제기
 2001. 3. 27. 원고청구 기각 판결(구 일본제철에 대한 회사승계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
 2002. 11. 19.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2003. 10. 9.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및 상고불수리 결정(확정)
 2005. 2. 28. 서울중앙지법 소 제기
 2008. 4. 3. 서울중앙지법 원고청구 기각 판결(2005가합16473)
 2009. 7. 16.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2008나49129)
 [위 부산고법 사건과 같은 이유로 일본 확정판결의 기판력 인정 등]

0 대법원의 파기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피해자들인 원고에 대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관련 일본 기업들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상고함.

-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피고 신일철주금(주)에 대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자(노무자) 4명에게 각 1억원 배상 판결[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주)에 대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자(노무자) 5명에게 각 8,000만원 배상 판결[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

0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이 재상고심 사건을 접수한지 5년,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패소한 후 2005년 2월 처음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13년만으로, 일제강점기 시대(1941년~1943년) 구 일본제철의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구 일본제철 등 일본의 강제동원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을 의미함

0 위 최초의 대법원 판결과 최종적 대법원 판결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하여,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법적 판단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문제를 바라보는 법적 시각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됨.

0 그 밖에 위 최초의 대법원 판결 이후 2013. 11. 1. 광주지방법원(1심)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제강점기 당시 13세, 14세의 어린 나이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던 여성 피해자(여자근로정신대) 5명이 2012. 10. 24. 미쓰비시중공업(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생존한 피해 당사자에게는 각 1억5,000만원, 그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

(2013. 11. 1.선고 광주지법 2012가합10852 판결)

[청구권협정 문서 공개]

2004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협정문 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협정문 중 청구권 관련 5권이 일부 공개되었고,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문서 완전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8월 알 권리를 명분으로 협정문을 전부 공개하게 됨.

* 우리 정부는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한 후 2005. 8. 26. '민간공동위원회(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한 후 다음과 같은 취지의 공식의견을 표명함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정부는 8월 26일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위원회는 한일협정 협상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보상의 성격, 무상자금의 성격, '75년 한국정부 보상의 적정성 문제 등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정부가 61년 6차회담시 8개 항목의 보상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 2천만 불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3억 6천만불(약 30%)을 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강제동원 기간중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근거자료 확보 노력 등 정부가 구제대책을 마련.
- 아울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추도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정부는 또한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
- “해남도 학살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방안을 검토.

□ 이날 회의에서 李海瓚 국무총리는 60년 이상 지속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차원의 노력도 다하도록 지시하였음.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 위 민간공동위원회의 의견표명(보도자료)과 관련하여,

- 2019. 7. 17.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말함.
고 대변인은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함. (문 대통령은 2005년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민간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그러나,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해찬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변호사는 같은 날(2019. 7. 17.)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민관공동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관련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며, “1965년 협정 당시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사적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고 밝힌바 있음.

2.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가. 2011. 8. 30.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2006헌마788 및 2006헌마648)

0 2011. 8. 30. 우리 헌법재판소는 군대위안부 할머니들과 원폭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에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함

0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 및 사법부의 입장은 원폭피해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모두 포괄적으로 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었고 위 청구권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 포기되었거나 배상이 종료되었다는 것이며, 반면 우리 정부는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폭피해자 문제 등은 위 청구권협정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보고 있음.(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양 정부 사이에 청구권협정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적 작위의무를 도출해내고 있음.)

0 현재의 결정은, 우리 정부가 군대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양국의 분쟁을 동협정(제3조)에 의한 ‘중재회부’ 요청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정부의 부작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정부가 군대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노력 등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

0 위 현재의 결정에 따라, 당시 우리 외교 당국에서는 관련한 TF팀을 구성하고 일본에 ‘중재회부’ 등에 관한 외교적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우리 정부는 2011. 9. 15.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양자협의 개시를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답변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라 다시 11. 15. 양자협의를 재촉하는 구상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

0 현재 결정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법률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군대위안부 피해 규모나 개인별 피해상황 등에 대한 실질적 조사와 자료 입수가 현재까지 극히 미진한 실정임.

0 2011. 8. 30. 군대위안부 관련 현재의 위헌결정 이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하여 발표된 우리 외교 당국의 입장

- 군대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전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
- 다만, 소모적인 법적 논쟁의 방지를 위해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일본에 대한 금전적 배상의 불요구, 자구 조치 실시,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의 방침을 표명함.

나. 2011. 2. 24. 현재 결정(2011. 2. 24. 결정 2009헌마94)

0 헌법재판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생환자)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를 배제한 법률조항이 헌법위반 여부(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큰 국외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함

0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소수의견)은 정부 수립 후 6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책무의 우선순위나 공평의 관점에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 무불이행으로서 위헌이라고 함

0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원금지급을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자 상호간 형평을 고려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동일한 처우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음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실태 조사와 한일 정부의 대응

가. 강제동원의 의미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은, 일제가 일으킨 만주사변(1931년)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 일제가 한국인을 상대로 군인이나 군무원(군속), 노무자, 위안부(일본군 위안부, 군대성노예) 등으로 강제로 동원하여 그 생활을 강요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는 생명, 신체, 재산(미수금)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 참조)

- * 징용, 징병의 강제성
- * 일본은 현재까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임
- * 과거부터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 체결로 군대위안부 등 강제동원피해 와 관련한 양국간의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며, 일본 법원도 판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나.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지원 현황

청구권협정 이후 처음 1974년 12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에 따라 1975년부터 1977년 사이 총 83,519명의 피해자 및 유족에게 91억8700만 원을 지급함(청구권자금 중 무상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
이 중 사망자 8,55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된 자금은 1인당 30만원씩 총 25억 6500만원임

(1) ‘대일항쟁기피해조사지원위원회’ 개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발족(2년의 한시기구 출범 및 1차 연장)

2008년 ‘강제동원피해 지원위원회’ 발족(활동기간 규정 없음)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2010년 양 위원회를 통합한 ‘피해조사지원위원회’ 출범

- * 통합된 피해조사지원위원회도 2011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출범하였다가 법률개정
으로 2012년 말까지 1년 연장, 다시 국회동의로 2013년 6월, 2013년 12월까지 2
차례 연장
- * 2013년 말 관련법의 개정으로 지원심사를 위주로 하면서 최대 2년간 2015년 12
월까지 존속기간 추가 연장
- * 2015. 12. 31. 위원회 활동의 종료 이후 잔여업무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과거사
관련업무지원단)에서 인수받아 처리하고 있음

(2)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가) 강제동원 피해조사[조사된 피해 규모]

- 2005. 2. 1.부터 2008. 6. 30.까지 3차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228,126
건의 피해 신고 접수(취하, 중복 신고를 제외하면 226,583건)
2012. 4.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18,639건에 대하여 피해자 결정(나
머지 각하, 기각, 판정불능 결정)
- *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피해 여부 판정불능 약 6,000건

- 피해자 성별 : 남자 약 216,000명, 여자 약 1,000명
- 동원 지역별 : 국외동원 약 194,000명, 국내동원 약 23,000명
- 동원 유형별 : 군인 약 33,000명, 군무원 약 37,000명,
노무자 약 155,000명(전체 피해 중 약 70%)

- *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신고 접수 336건 중 피해자 인정 23명(기타 대
부분은 사망, 고령, 자료부족 등으로 판정불능 결정)
- * 2018. 11월 현재 240명 여성가족부 등록(생존자 27명)

- 피해 상황별 : 사망 및 행방불명 약 25,000명, 후유장애 약 3,400명,
생환 약 189,000명

- * 1957년-1958년 당시 노동청에서 대일 배상청구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인 ‘**왜정시피징
용자 명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총 285,771명임.
위 자료에 대하여 2006년-2008년 위원회에서 시, 도를 통하여 사실 확인 및 검증
을 거친 결과 피해인정 가능한 인원은 121,501명 정도임(검증-왜정시피징용자 명부)
- * 1971년- 1993년 사이 일본 정부의 이관문서에 의하면 약 48만명 등재
- * 2013. 11월 국가기록원에서 확인 발표한 ‘**일정시 피징용(징병)자 명부**’에 의하면
약 22.9만명 피해 신고(전쟁 중 1952년 대통령의 지시로 1953년까지 피해신고 및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명부 작성, 주일 대사관 보관 중 발견)

(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심사[지원금 지급 규모]

- 2007년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추가 보상에 착수하여
2008. 9. 1.부터 2014. 6. 3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위로금 등 지급신청 112,908건 접수
2015년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취하 등을 제외한 112,556건 심사
결정 완료
- 심사결정 건 수 중 각하 등을 제외한 72,631건에 대하여 지급신청을 인용하고 위
로금 등 합계금 약 6,184억원의 지원금 지급 결정(지급결정률 약 64.5%, 각하 및
기각률 약 35.5%)
- * 사망·행불 약 18,000건, 부상 약 14,000건, 미수금 약 16,000건,
의료지원금 약 25,000건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다) 지원 내용(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관련법에 의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피해자라도 제외(특별법 제7조)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따로 지원을 받
고 있으므로 제외
- 강제동원 희생자 : 위로금 2,000만원
- * 일제에 의하여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이 공포, 시행된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사람
-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인당 234
만원 공제(당시 사망자 1인에게 지급한 30만원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을 공제)
- * 과거 우리 정부는 1975년-1977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
제징용 사망자 8,552명에 대해서만 1인당 30만원씩 약 25억6,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 부상장해자(위로금) : 노동능력 상실률에 의한 등급(14등급) 기준에 따라 위로금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5단계)
- 미수금 지원금 : 일본국 통화 1엔 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
- * 미수금은 같은 기간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의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급료, 수당 등을 말함.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 1인 당 연 80만원
- 그 동안 위원회는 피해조사 약 23만 건, 지원심사 약 11만 건 등 합계 약 34만 건의 피해신고 사건, 지원신청 사건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지원금,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약 7,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예산 사용

다. 일제 강제동원의 배경 및 실태

(1) 강제동원의 배경(시간적, 공간적 배경)

○ 일제 식민지 치하 1931년 일제의 중국대륙 침략에 의한 만주사변 및 1932년 상해사변의 발발, 1933년 국제연맹 탈퇴 이후 1937년 중일전쟁 개시와 함께 일본군이 남경(난징)을 함락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게 된 전쟁 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고, 또한 17세 이상의 조선인 남자를 육군으로 동원하는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 시행됨.

- * ‘국가총동원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자금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법률로서, 동법의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국외 강제동원이 이루어짐(국외강제동원 희생자)

○ 또한 1939년 ‘미곡 공출’ 등 전면적인 배급제의 실시와 함께 14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이 광범위하게 시행됨(징용 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 ‘아동노동(소녀노동)’의 대표적 사례

위원회에 신고 된 군복제조 공장의 피동원자 285명에 대한 조사결과, 8-16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평균 12세)이 근로정신대, 할당 모집, 국민징용 등의 방식으로 동원되어 ‘12시간 2교대제’ 등 가혹한 노동조건 하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10세 이하의 아동이 54명으로 이는 당시 시행된 ‘국민징용령’에도 위배됨.

○ 1941년 중국 대륙 점령 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에서는 1942년부터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 결정과 함께 조선인을 일본군의 포로감시원(군무원)으로 동원하기도 하고, 1943년 ‘학도지원병제’를 실시하고, 마침내 1944년 및 1945년 2차례에 걸쳐 만 20세의 조선인 청년을 강제로 군대에 동원하기 위한 ‘징병’을 광범위 하게 실시하고,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됨.

* 여자근로정신대

- * ‘학도지원병제’는 징병 적령이 지난 고등전문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역으로 동원하는 제도로써 1944. 1. 20. 조선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인 학도지원병 4,000여 명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일제히 일본 군대에 입대하게 됨
* 나아가서 ‘징병에 앞서 황군의 일원으로 되는 길’이라고 하여 징병제 이전 연령인 만 14-18세의 조선인을 상대로 ‘소년지원병제’를 실시함(육군소년병 모집)

0 위 기간 동안 일제는 중국 본토, 대만, 사할린뿐 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 및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사이판,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등 남태평양 일대 광활한 지역에 걸친 전투수행과 점령지 관리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조달을 위하여 식민지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쟁수행을 위한 인력수요가 급증하게 됨.

* 조선인 B,C급 전범 문제(포로감시원)

1942년경부터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점령지(동남아, 남태평양 지역 등)에서 나포한 연합국 포로들(약 30만명)에 대한 수용시설 감시 및 포로감시원으로 조선인들이 대거 동원됨(3,016명)

패전 후 포로감시원 129명은 B,C급 전범으로 연합국의 재판에 회부(사형 14명, 나머지 유기징역형)

* 전체 조선인 B, C급 전범 148명 중 사형 집행 23명

(2) 강제동원 피해 규모 및 실태

(가) 개괄

각종 자료와 학계 연구에 의하면, 일제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동원 피해자는 연인원 약 780만 명으로 추산됨(중복동원 인원 포함)

군인 약 21만 명, 군무원 약 6만 명, 국외 노무동원 약 104만 명, 국내 노무동원 약 650만 명(도내동원을 제외한 국내동원 약 70만 명)

* 실제 피해자는 국내 약 70만 명, 국외 약 134만 명으로 합계 약 204만 명으로 추산(광복 당시 인구 약 2,500만 명)

* 현행법상 국외동원 위주로 피해조사 및 지원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피해신고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국내외 추산 피해자 약 204만 명 중 현재까지 피해조사는 약 11%에 불과하여 입법 당시의 취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음.

(나) 일본군위안부(일본군 성노예) * 군대위안부 및 노무위안부

0 학계에 의하면, 군대위안부의 규모는 약 8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추산되고, 그 중 대부분은 조선 여성임(중국, 필리핀, 대만, 네델란드 등)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0 2004년부터 위원회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한 336명 중 피해자 인정 23명, 기타 대부분 판정불능 결정(시간의 경과로 사망, 고령, 자료부족)

*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위안부피해자법)

0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기본 입장

- 우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임.
다만, 1993. 3월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금전적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1993년 6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일시금 4,300만원 지급)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기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해결을 명분으로, 1993. 8월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담화 발표 이후 1995년 민간을 중심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 1인 당 500만 엔 상당 지원 발표(2007년 3월 기금 해산됨)

- 위 기금 설립 당시 우리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은 기금 설립의 본질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금활동 저지 운동을 전개함.

*** 1993년 ‘고노 담화’의 요지**

1993. 8. 4.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공식성명

-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되었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 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

-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들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음.

-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

0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협상 타결

2015. 12. 28.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여 최종적 종결을 약속함.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고노 담화’와 동일한 내용으로, 일본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힘.

당시 한일 외교장관은 위 협상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사항을 발표함.

*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모색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0 화해·치유재단의 설립과 활동

- 2016. 7. 28. 한국에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 엔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함.
-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100억원)을 재원으로 위안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및 위안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한 바 있음.(위안부 피해자 1인당 지원금 1억원, 그 유족에게는 2000만원 지급)
- 그러나 2015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협상과 이에 따른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치유금을 거부한 피해자와 시민단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침.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반대여론에 힘입어 정부는 재단을 해산하는 수순을 밟았으며,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방향으로 처리할 방침을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의 손상을 우려하는 등 재단 해산 방침에 반대한 바 있음.

(다)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규모 학살 등 피해 실태 조사

- 0 1923년 ‘관동대진재’ 관련 조선인 집단 학살사건 : 조선인 약 4,000명 내지 5,000명 집단 학살(본격적인 강제동원 이전에 일본에서 발생한 조선인 대규모 학살 사건)
- 0 1942. 2. 3. 조세이 탄광 수몰사건 : 야마구치 현 소재 조세이 탄광(해저탄광)에서 작업 중이던 조선인 피징용자 집단수몰(일본 측 자료 135명 내지 136명, 유해 미발굴)
- 0 1944. 7. 9. 타이헤이마루 폭침사건 : 강원도, 황해도 일대의 조선인 피징용자를 수송하던 ‘타이헤이마루’ 선박에 대한 미군 잠수함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피징용자 집단수몰(일본 정부 발표 182명 사망)
- 0 1945. 8. 17일에서 및 18일 사할린 가미시스가 경찰서 집단학살사건 : 패전 직후 일본군이 조선인 18명을 총살 및 방화하는 등 학살
- 0 1945. 8. 20일에서 25일 사할린 미즈호 마을 집단학살(몰살)사건 : 패전 직후 일본군이 조선인 27명을 군도 등으로 참살
- 0 1945. 8. 24. 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 : 해방 직후 일본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던 선박의 폭침으로 승선한 조선인 피징용자 집단수몰(일본 정부 발표 사망자 524명, 피해자 및 학계 추정 5,000명 이상)
- 0 1945. 8. 20. 전남 해남 옥매광산 노무자 해상조난사건 : 해방 직후 제주도에서 해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남으로 귀환하던 해남 지역 '옥매광산' 출신 피징용자를 태운 선박의 화재로 승선 인원 255명 중 118 명 집단사망

0 기타 중국 하이난 섬 조선인 학살사건(천인갱), 이오지마 전투,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이판, 팔라우 등 태평양 지역 격전지와 옥쇄사망 등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 대두

*** 일본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의 조선인 무단 합사(合祀)**

야스쿠니 신사는 패전 전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종전 후 종교시설(종교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군국주의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음.

(천왕 중심의 일본군국주의 체제의 정신적 지주로서 기능)

특히 태평양전쟁 당시 B,C급 전범 939명에다가 1978년 A급 전범 14명을 몰래 합사함으로써 논란이 계속됨.

무단 합사 조선인(군인, 군속) 21,181명

위 합사자 중에는 당시 생존 조선인 60명이 있는 등 무성의한 합사
한국인 무단 합사자 중 적극적으로 명부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는 38명 정도이며 (생존자 9명, 유족 29명), 그 중 일부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을 상대로 조합사자 명단 삭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까지 1, 2심에서 패소함. (조선인의 합사는 종교행위로서 종교행위에 대한 법원의 개입불가 논리)

*** 최근 A급 전범에 대한 분사(分社) 논란 : 신사 측 분사 적극 반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246만 명은 통일체로서 관념적으로 하나의 신격(軍神)을 가지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전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1953년 일본 중의원 '전쟁범죄수형자사면' 결의)

(라) 미수금 피해

0 현재까지 밝혀진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군인, 군무원, 노무자)에 대한 급여 등을 공탁한 공탁금은, 위원회 보유 자료 약 18만 건이며, 일본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 기준으로 약 1억2,000만 엔에 이름(일본 정부 확인)

* 한편, 일본 정부가 2009년 일본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 공탁 형태로 보관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각종 수단까지 더하여 합계 2억1,500만 엔(현재 가치로 6조 원가량)에 이름

0 최근 '일본 금융청 감독국 총무과 우편저금 보험감독 참서관실' 문건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은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임금 일부를 강제로 떼어 매달 일본 우정은행 우편저금 등으로 저금한 사실이 드러남(당시 일제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고 기업들에 강제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저금 비율을 할당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의 저금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음)

0 기타 군사우편저금, 일반우편저금, 후생연금 등 미수금에 관한 구체적 자료의 확보 및 일본으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우리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통하여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노무자들이 저금한 돈의 내역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비협조적임)

0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외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정부가 받은 경제협력자금 중 무상 3억 달러 등에 강제동원 노무자의 미불임금과 개인 저축 등이 이미 포함됐으므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재론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음

(마) 희생자 유해의 실태조사, 발굴, 봉환, 유족 찾기 등 문제

0 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일본의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보관 중이던 군인·군속 유골 총 423위 봉환 완료.

0 또한 일본 내 94개 지역 강제동원 작업장에 산재된 유해 4,021 위 확인.

0 기타 일본 지역에서 매장되거나 매몰, 수몰된 유골 및 사할린 지역, 중국 해남도, 시베리아, 동남아, 남태평양 지역 등 태평양전쟁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유골들의 실태 조사, 발굴, 수습, 봉환, 유족 찾기 등 문제가 남아 있음.

- * 일본 정부의 전몰자 유골수습 실태와 비교
- * 현재 사할린 지역 조선인 사망자 묘지 약 6,000기 확인

(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0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광복 이후에도 사할린 지역은 최근까지 이념적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었음.

(사할린 지역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의 근원)

0 이에 따라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다른 지역 국외 강제동원처럼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어 국외 강제동원이 개시된 1938. 4. 1.부터 조국 해방일인 1945. 8. 15.까지가 아니라, 1938. 4. 1.부터 ‘한소수교조약’이 체결된 1990. 9. 30. 사이의 기간 중 또는 그 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로까지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게 됨(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0 나아가서 사할린 지역 피해자의 경우,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과 행방불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한소수교조약 체결 이후 1992. 9. 29. 최초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된 시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바 있음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 해방 당시 일본 및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사할린에 억류된 한인 약 43,000명 중 약 30,000여 명이 강제동원 피해자(주로 노무자)로 추정되나, 정확한 한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진함

* 조선총독부 재무국 자료에 의하면, 1039년-1943년 사이 주로 탄광(35개소), 금속광산, 토목건축 공사장, 제지공장, 벌목 분야에 강제동원된 노무자의 규모는 16,113명임(1944년 이후 자료 미반영)

- 현재까지 사할린 지역 거주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후손들의 희망에 따른 국내 이주사업도 미진한 실정임

0 현재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사) 원폭 피해자 문제

0 일본의 미진한 협조와 원폭 피해자 중 강제동원 관련 자료의 부족 등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행(원폭피해자법)

4.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일본의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0 일본 정부는, 지난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 및 최근 2018. 10. 30.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는 입장임

0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2018. 11. 8.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긴 것’이라고 거듭 주장함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강구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0 그전에 이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확정 전이라도 당사자 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패소가 확정되어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고, 한국 정부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을 밝힌 바 있음.

0 대법원 판결의 여파로 일본의 해당 기업이나 경제단체의 거센 반발과 함께 극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다소 '과격한 대응'도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 바 있음(일본 사회의 우경화 경향)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

2012년 12월 일본의 총선을 앞두고 최대 야당인 자민당의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다케시마의 날로 규정된 2월 22일을 정부 주도 행사로 승격시키고,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장에 반론하고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함.

그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는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사죄한 고노 담화 등 역대 정부의 과거사 반성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공약함

아베 총리는 위 최초의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3. 4월에도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 내각이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발언을 함.

- 이시하라 신타로(전 도쿄도 지사,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2012. 11. 16. 자신이 만든 극우정당인 '태양의 당'과 하시모토 도루가 이끄는 우익정당 '일본유신회'를 합당하기로 함

그는 과거부터 '일제의 침략전쟁이 아시아의 식민지 국가들을 해방시켰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를 찬양하면서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 그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음

그는 2013. 5월에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침략이 아니다.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학이다"고 주장한 바 있음

- 2013. 5. 13.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는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강자 집단에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2014. 1. 25. 모미이 가쓰토(일본 공영방송 NHK 신임 회장)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는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가) 있었고, 독일과 프랑스 등에도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한국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나라가 일본뿐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다"라고 한 바 있음.

0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

-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3차에 걸쳐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 규정에 따라 징용피해에 대한 상호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묵살하고 있다가 최근 2019. 6월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 직전 징용배상판결 기금을 양국 기업들이 반반씩 부담하여 조성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일본이 거절함.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 2019. 7. 1.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
-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됨.
-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 2015. 12. 28.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정부간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2016. 7. 한일 정부간 합의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시킨 것도 작금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파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공약이었음).

*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문제 : 울산, 부산, 대전 등

-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고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 등 강제집행을 단행할 경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방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0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정식의제로 상정하여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회원국들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힘.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반일감정 극대화[2020년 총선과 정략적 반일감정]
“남은 건 절치부심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아베 정권의 졸렬함과 야비함에는 조용히 분노하라” (조국 민정수석)
- ‘토착왜구’, 반일 ‘의병운동’, ‘국채보상운동’ 선동
* 조국 민정수석의 ‘죽창가’(김남주)
- 일본의 ‘경제 침략’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일본은 다시금 국제질서를 무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너뜨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2019. 7. 18.)

- 일제상품불매, 일본여행금지 운동 확산
-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과 정치 [2019. 7. 18.자 뉴시스 보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0% 선을 회복했다.

최근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대일(對日) 강경 기조로 전환하면서 여론이 반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실시한 7월 3주차(15~17일)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50.7%(매우 좋음 28.6%, 잘하는 편 22.1%)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 심리에 큰 폭(51.3%→47.8%)으로 하락했다가 한 주 만에 50% 선을 회복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본에 대한 로키(low-key) 대응에서 강경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중도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도 '국채보상운동'과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일간 지지율은 지난 14일과 15일 48.1%에서 16일 52.3%로 급등했다. 리얼미터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反日)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같은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응 기조가 중도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 0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자 및 유족, 시민 단체 등의 개별적, 집단적 소송 및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시 강제동원과 관련한 국제적 대응 및 연대활동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문재인 정권의 민족적, 감정적 반일 분위기 유발).
- 0 우리나라 법원에서 패소한 일본의 강제동원 관련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제집행에 불응하는 등 판결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마찰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임.
- 0 또한 국내에 있는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진출과 투자, 사업 활동이 제약될 경우 상호 무역보복이나 FTA 체결 등 경제협력 관계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0 나아가서 일본 내 극우 세력의 과격화 언동 및 반한 여론의 확산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국내의 반일 여론의 확산에 따라 양국 간의 정치, 외교적 갈등이 독도 문제, 군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위기

2019. 7. 18.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에 대하여, 청와대는 일단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자유진영, 해양세력으로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위상

* ‘친일 프레임’을 이용한 반일, 반미감정 확산으로 친중국, 친북한 경향 강화.

0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미흡하거나 국민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반일문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좌우 이념을 넘어서는 감정적 공감대가 넓고도 깊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반일 종족주의를 극복할 필요성 있음).

0 이에 따라 선택지가 별로 없는 우리 정부도 위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대법원 판결 및 현재의 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망됨(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 고민).

* 1972년 중일간 국교재개를 하게 되면서 발표된 중일공동성명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

6. 강제동원 문제와 한일갈등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 과거 청산을 위한 한일관계의 전제적 문제점

- 식민 지배국과 피식민국의 사후 처리문제
- 승전국과 패전국의 전후 처리문제
-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동안 우리 정부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에게 정부의 법적 책임을 전제로 배상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일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음

가. 강제동원 관련 정부의 상설 기관 설치

상징적으로나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별 조사 및 피해실태 전반에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과 함께 필요한 정보 또는 편의 제공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응을 위하여 강제동원 관련 상설 정부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스라엘 정부가 주도하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학살 피해조사 및 추모를 위한 상설 기관으로 1953년부터 피해자 약 600만 명을 조사하고, 약 300만 명에 대한 DB화를 완료한 야드바셈 'Yad Vasem' 참조)

* 시몬비젠탈센터(SWC)

1977년 설립되어 2차 대전 당시 나치 전범을 공개, 추적, 고발하는 유대인 인권단체

나. 정치적, 외교적 해결 방안 강구

0 결국 일제 강제동원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일 정부 간 정치적 및 외교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치, 외교적 접촉의 필요성 있음(장차 '신 한일협정의 체결' 등 정치적, 외교적 포괄 협상을 위한 준비).

0 현재 위원회의 조사 심의를 거친 강제동원 피해 사례만 하더라도 22만 건 이상에 이르는바, 앞으로 이를 모두 개별적 소송 등 사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

0 개인청구권과 소멸시효

- 2012년 최초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송을 제기(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는 2000. 5. 1. 소제기, 신일철주금의 경우는 2005. 2. 28. 소제기)할 시점까지는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소송을 제기한 시점 이후 또는 적어도 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시점인 2012년 5월 24일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위 판결 선고 이후 현재까지도 소제기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피고 회사가 항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

* 국제법상 인정되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전통적인 시효중단 이론에 의할 것이 아니며 피고측 소멸시효의 주장은, 제소 시기가 언제든지 바로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극단적 견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강제동원 문제는 개별적 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이 아니라 한일 간 정치적, 외교적 노력으로 한꺼번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0 일본 측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등 강제동원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일본 정부의 사과, 관련 일본 기업의 기금출연 방안 등 미래지향적으로 포괄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타협 방안 마련.

0 이를 위하여, 독일과 이스라엘 사이, 독일과 유럽 각국 사이의 전후처리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독일의 '기억, 책임과 미래'재단과 비슷한 형태의 한일 공동 기금출연에 따른 재단 설립·운영 등의 방안 고려).

0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 지난 6월 19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며 답변 시한을 7월 18일까지 정했으나 청와대는 지난 16일 일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7월 18일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7월 17일 성명을 내고 외교적 해결 방안으로 일본의 제안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강제징용 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한국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

- 한변 측에 의하면,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면 제3국의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다"는 것임.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식민지배 당시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 문제가 50년 전의 한일협정과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의 국제법 체계에서 명확히 판별하기 위하여 국제적, 중립적 중재를 거치는 것도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설사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중립적 중개를 통하여 결론이 나오면 한일 양국 국민이 흔쾌히 수용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첨예한 한일갈등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임(과거 일본군위안부의 경우).

- 실제로 국가 상호간의 주권 문제로 인하여,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국가 상호간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상대방 국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적, 중립적 재판기구에 의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임(국내 법원 재판의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국내법적 효력).

다. 한국 정부의 판결금 위자료 채권 양수

-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 위자료 채권을 양수하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취득하게 된 위자료 채권은 한일 양국 간 청구권 협정상의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일부 법학교수들)
- 확정판결을 받은 위자료 채권이 강제동원 생존자에 대해서만 1인 당 1억원 전후에 이르므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위로금 지급(2000만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의 공동 수습, 봉환 사업의 실시

0 일본은 2016. 3. 30. '전몰자 유해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다음 국가적 차원에서 군인, 군속 희생자 유골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유해발굴 대상도 군인·군속으로 제한했으나 민간인으로 확대함).

0 2016년 2월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에 대해 한국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한국정부가 일본 측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함.

0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하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은 피해배상이나 보상 문제와 비교하면 훨씬 접근이 수월할 것으로 보임(인류 보편의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

마. 일본 국민의 변화를 이끄는 방안 강구 : 상호 감정적 대응 자제

0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일본 정부와 국민을 계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0 또한 양국 국민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하여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임.

*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회 공공의 이익인 공익이나 국익과 관련된 재판인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미국에서도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국무부의 의견을 듣는 ‘법정조언자’ 제도가 존재함.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인 외교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나 개별 법관의 독자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비해 우월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고도로 정치적, 외교적인 사안일수록 해당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로 하여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사안마저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관의 양심’을 핑계로 법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의 극단적 형태이며, 실제로는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정치의 소멸임.

“Forgivable but Unforgettable”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된다.)

- 중국의 ‘남경학살 기념관’ 문구

<참고 자료> 독일의 ‘기억, 책임과 미래(EVZ)’ 재단

0 독일의 경우 전후 초기에는 전범 국가로서 책임이 있는 독일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나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주도함.

(1949년-2010년 사이 연방 배상 및 보상법의 제정 및 시행, 금융제도를 통한 지원)

* 연방보상법에 의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게 합계 680억 유로의 배상 및 보상금 지급(약 102조원).

0 ‘기억, 책임과 미래(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재단 (EVZ)

2차 대전 당시 동유럽과 구 소련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강제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00. 8. 독일연방 의회에서 정부가 입법을 주도한 재단 관련법을 제정하고 재단을 설립함.

* 설립기금으로 51억 유로(1유로 당 1,500원 기준으로 약 7조6,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 정부와 6,500개 관련 기업이 각 1/2 분담

* 최근까지 강제노동자 및 유족 등 신청자 250만 명 중 167만 명 지급

* A, B, C 등급으로 분류하여 합계 43.7억 유로 지급(약 6조 5,550억원)

* 증거조사 및 피해자 자격심사

각국의 파트너 기관에 위임(폴란드의 ‘폴란드 독일 화해기관’과 같이 피해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국제협력기관의 조사 및 심사)

문재인 정부 反日 역사관의 뿌리

김 용 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反日)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양국 간 무역 보복전으로 확산될 기세다. 청와대의 무슨 수석이라 하는 사람은 ‘죽창가’를 자신의 SNS에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의 열두 척의 배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 언론들은 연일 반일·혐일 기사로 지면과 화면을 도배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은 자연스럽게 친중(親中) 코드로 연결된다. 중국에서 우리 국익이나 자존감을 해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문재인 정부는 침묵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중국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에 짝 소리 한 번 못하고 넘어갔다.

E. H. 카와 신채호 사관의 영향

한국 사회의 역사관을 휘어잡고 있는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이 있다. 첫째는 E. H. 카의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명제 위에 신채호의 “역사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얹혀져서 생성된 투쟁사관이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로 해석하는 것은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 현재 자기들에게 필요한 역사를 제멋대로 새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 항일 무장투쟁만을 정의요 진리로 자리매김하는 투쟁사관이 우리 근현대사를 오염시키고 있다.

둘째는 근거 없는 한국인의 우월의식에 뿌리를 둔 중화 사대주의 흐름이다. 주변국인 여진(청나라), 왜(일본)은 야만의 세계로, 중국을 중화문명의 세계로 단층 짓는다. 한국은 중화문명의 대리인이자 후예로 포지셔닝 한다. 투쟁사관과 중화 사대주의 이 두 가치관이 반일 친중의 정서를 확대재생산하는 주요 동력원이다.

한국인들의 정서에 세기말적 쇼크를 일으킨 사건은 1637년 병자호란이었다. 40일간의 농성 끝에 인조는 삼전도에 나가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여진족 추장 홍타이지(청 태종)에게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아홉 번 이마를 땅에 짚는(三拜九叩頭禮)” 치욕스런 항복을 했다.

여진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오랑캐 무리였다. 이런 허접한 무리에게 항복했으니, 조선 지도부는 멘탈 붕괴 상태가 되었다. 1644년 중화 문명국이자 사대의 대상이었던 명(明)이 여진족이 세운 청(淸)에게 멸망했다.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이후 조선 지배층은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 북벌론을 들고 나왔다. 인구 3억이 넘고 군사력 수백만에 달하는 세계적인 경제·군사강국 청나라를 병력 1~2만으로 정벌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선 지배층은 슬그머니 북벌론을 폐기하고 이미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명나라에 의리를 지킨다는 배청복명(排淸服明), 존명사대, 소중화 등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 망상의 세계로 현실 도피했다.

“중원이 오랑캐 만주족에게 더럽혀진 현실에서 중화 문물을 간직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중화문명의 적통이자 계승자는 만주족 오랑캐가 세운 청이 아니라 조선이다. 따라서 이 세상 유일의 문명국이요 중화국은 조선이다. 조선은 ‘소중화’의 나라다.”

이것이 조선 지도층의 현실 인식으로 자리잡은 소중화 사상이었다. 조선 지배층은 명을 칭할 때는 중조(中朝)·황조(皇朝)·황명(皇明)으로 표현했다. 반면에 청은 ‘오랑캐’였다. 그들 머리 속에 중국은 명나라였을 뿐, 결코 청나라는 아니었다.

그들은 왕궁 깊숙한 후원에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대보단(大報壇)이란 사당을 지었다. 조선 국왕은 세자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청나라에게 들길까봐 야심한 밤에 몰래 명나라 황제들을 위해 제사를 올렸다. 제사 대상은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 조선을 구해준 만력제(萬曆帝), 명을 건국하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한 홍무제(洪武帝), 그리고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崇禎帝) 등 세 명이였다.

신채호의 ‘한놈 정신’ 과 의열단 선언

1704년부터 시작된 명 황제의 유령에 대한 제사는 1894년 청일전쟁을 위해 일본이 서울을 점령한 후 시작된 갑오경장으로 폐지될 때까지 계속됐다. 명나라 황제는 자기 나라가 망해 지구상에서 사라진 후에도 조선 국왕과 문무백관들부터 200여 년 용승한 제사상을 받아먹었다.

만주족이 청을 세운 기회를 타서 조선은 중화사상과 절연하고 새로운 자아의식을 출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그들은 죽어 유령이 된 명 황제들을 불러내 국가 차원에서 제사 지내고, 소중화, 존명의리 이데올로기라는 최악의 정신세계에 함몰되었다.

소중화 문명관을 고수하기 위해 조선은 청을 통해 흘러오는 근대화의 조류와 서양 선진문물을 거부하는 시대착오를 반복했다. 안팎으로 나라의 문을 닫아 걸고, 해외와의 교류를 막아야 소중화 세계가 온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선의 역사시계는 1637년부터 300년 간 정지되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이 청을 쫓아내고 한반도를 병합하면서 ‘청’이라는 적대적 타자는 일본으로 대체되었다. 적대적 타자인 일본에 대한 저항과 거부, 반감은 한국인들의 강렬한 자주의식과 민족정서, 주체사상과 결합되어 집단 광기를 일으키는 파시즘적 전체주의 멘탈리티를 구성했다.

좌익 진영은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임진·정유왜란 때의 의병 투쟁에서 시작하여 동학 농민운동, 일제 침략기의 항일 무장투쟁, 3·1운동과 4·19 의거로 꽃을 피웠고, 그것이 1970년대 반독재 민주투쟁과 광주사태, 박근혜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표출되었다고 믿는다.

저들의 투쟁사관에서 핵심 키워드는 ‘항일 무장투쟁’이다. 신채호 사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놈 정신’이다.¹⁾ ‘한놈’이란 나라를 잃은 한국인 모두가 하나의 몸뚱이가 되어 일제와 투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놈 정신’은 을지문덕과 강감찬 등 민족 영웅의 유훈에 따라 승리만을 위해 용진하는 투사로 상징된다. 친구도 스승도 그 대오를 이탈하면 베어버릴 원수다. 왼팔이 배반하면 즉각 오른팔이 잘라내는 화끈한 투쟁의 세계다.

이러한 정신구조 하에서는 내면을 성찰하는 자유와 독립의 개인이 될 수 없다. 신채호의 ‘한놈 정신’은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든 그런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투쟁을 위해, 즉 간악한 일제를 타도하기 위해 세계정세 눈치 보지 않고 하나뿐인 육신을 아낌없이 내던지는 선명성이 존재할 뿐이다.

신채호의 극단적인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김원봉의 청탁을 받아 쓴 ‘의열단 선언’이다. 조선혁명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언에서 신채호는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주창한 외교독립론, 실력양성론, 준비론, 자치론을 격렬하게 성토했다. “일제와 협력하려는 적(敵)”으로 규정했다. 그러한 독립운동 방략은 “칼 한번, 총 한 방 쏘지 않고 편지질이나 하고, 조선의 독립을 외국의 처분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신채호는 ‘의열단 선언’에서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는 다 우리의 적”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들도 의열단의 처단 대상이 되었다.

적대적 타자가 청(淸)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

신채호와 의열단원들이 추구한 노선은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직접혁명, 즉 폭력적 암살·파괴·폭동을 줄기차게 일으키는 것”이었다. 신채호는 “2000만 민중이 일치하여 폭력파괴의 길로 나가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의열단 선언’을 끝맺고 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大本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 민중과 휴수(携手·손을 잡고 함께 간다는 뜻)하여, 부절하는 폭력-암살·파괴·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삭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신채호 세력들이 의열투쟁을 전개할 무렵 이승만은 일손 미국 대통령에게 장차 성립할 국제연맹이 완전독립을 전제로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하여 위임통치해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에 두는 조건으로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승만이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유는 이것이 성취될 경우 “한반도는 중립적인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모든 나라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의 청원서는 한국인의 독립이 세계의 민주주의와 동양의 평화를 위해 얼마나 긴요한지를 미국의

1) ‘한놈 정신’ 관련 부분은 이영훈, ‘한국민족주의의 전개’, 이승만학당 강의노트(2019년 6월 1일) 참조.

정치 엘리트들이 공유한, 당대 최고의 지성만이 피력할 수 있는, 최고의 논리와 설득력으로 쓰여진 내용이었다.

그 후 역사는 이승만의 청원대로 흘렀다. 26년 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 3년간 통치한 다음 독립시켰다.

신채호를 비롯한 투쟁론자들은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신채호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소식을 듣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성토했다.

항일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입으로는 투쟁을 외쳤지만 현실은 고단했다. 임시정부가 운영했던 광복군은 병력이 가장 많았을 때가 680여 명,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가장 많았을 때가 400여 명 선이었다. 무장이라고 해 봤자 소총, 기관총, 박격포 정도였다.

병력을 유지할 자금도 없었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 소속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활동했다. 그러다 중국공산당의 공작을 받고 연안으로 탈출하여 마오쩌둥의 품에 안겼다. 광복군도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광복군 지휘권을 중국군 참모총장에게 넘겼다. 광복군 지휘부의 모든 요직은 중국군 장교가 차지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중화, 한족 정권, 즉 쑨원-장제스 정권이나 마오쩌둥 정권)에 의지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적대적 타자가 청에서 일본으로 바뀐 것 말고는 조선 후기 정신세계의 완벽한 답습이었다.

소련공산당, 한반도 공산화 방해세력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

그들은 또 중화사상에 깊은 뿌리를 대고 있었다. 몇 가지 실증적 예를 들어보겠다. 유인석은 조선 성리학의 정통을 잇는 의병장이다. 그는 1910년 러시아로 망명했는데, 유인석은 1911년 신해혁명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 한족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중화의 적통을 회복하면 소중화인 조선의 독립이 저절로 이루어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쑨원(孫文)이 공화정을 실시하고 공자 학교를 폐쇄하자 유인석은 절망 낙담하여 죽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대리 겸 외무총장 신규식은 광둥(廣東)정부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쑨원 주석을 예방했다. 광둥 정부 요인들이 좌우로 도열한 공식 접견 자리에서 신규식은 쑨원에게 중국 황제 알현하듯 여섯 차례에 걸쳐 최고 예우의 경례를 올렸다. 중국 언론이 이를 “황제에 대한 예의를 보였다”고 보도하자 임시정부에서 큰 논란이 발생했다. 비판에 시달리던 신규식은 곡기를 끊고 굶어죽었다.

중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 세력은 조선 성리학자들이 간직했던 소중화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더없이 순진하거나 몽상적인 동양 평화주의자였다. 중국에서 활동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그들이 주도하는 중국혁명과 항일전쟁에 참여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독립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다.

해방 후 한반도 남북에서 공산화에 반대하는 세력을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한 것은 소련의 전략이었다. 『평양의 소련군정』의 저자 김국후는 북한의 친일 청산은 소련이 북한에서 소비에트화 혁명을 진행하며 ‘일제 청산’을 가장 핵심적인 정신 전략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 증거가 1945년 9월 10일 평양주둔 소련군정사령부가 각 지역 위수사령부에 지령한 ‘독립 조선의 인민정부 수립 요강’ 6개 항이다.²⁾

이 지령문은 북한에 소련식 공산국가(그들 표현에 의하면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일본 잔재 사상과 친일 인물을 철저히 소탕한다, 일제에 희생적으로 투쟁해 온 혁명세력과 일제 착취 대상인 노동자와 농민을 정치 일선에 내세우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 조선 인민정부 수립요강’이 지령된 것이다.

이 지령을 38선 이남 지역에서 실천에 옮긴 것은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이다. 1945년 10월 환국한 이승만의 정치적 목표는 귀국 일성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로 표출된 ‘대동단결, 자주독립’이었다. 그런데 서울의 소련 영사관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공산당 지도자 박헌영이 이승만의 노선에 반기를 들었다.

박헌영은 10월 30일 “통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덮어놓고 한데 뭉칠 수는 없다. 조선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세력이 남아 있다. 이러한 친일파를 근절시킨 다음 옥석을 완전하게 가려놓고 순전한 애국자, 진보적 민주주의 요소만을 한데 뭉쳐 통일해야 한다”면서 이승만의 대동단결 노선에 선을 그었다.

이승만은 11월 7일 저녁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산당이 자기에게 부여한 인공의 주석 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은 이승만을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도덕적 권위

좌익 전체주의적 투쟁사관에 젖은 세력들은 E. H. 카와 신채호의 정신세계에 입각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고쳐 쓰기 시작했다. 일제하에서 항일무장투쟁 이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유한 존재가 의열단과 조선의용대의 주인공 김원봉이다.

그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외교독립론 진영을 이끌었던 이승만의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이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만주군 장교 경력자다. 신채호의 ‘한농정신’으로 볼 때 이것은 완전무결한 친일분자에 해당한다. 항일 무장투쟁의 성스러운 민족감정을 소유한 김원봉 한 방이면 이승만 박정희는 간단히 친일파로 날려버릴 수 있다.

김원봉이 비록 소련공산당의 돈을 받아 의열단 활동을 했다거나, 중국 국민당 자금 지원을 받아 조선의용대를 운영했고, 후에 월북하여 북한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 역

2) 이 가운데 ‘일제 청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비일본적인 각종 인민을 중심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결성해야 한다. 소비에트연방은 끝까지 노동자 농민정권 수립을 미·영·중에 제안할 것이다. ②인구수에 비례해 토지를 재분배해야 하며 토착 지주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몰수한다. 몰수한 일본인 소유 토지는 정부가 농민에게 분배한다. ③일본인 소유 공장은 일본적 요소를 없애고 공장 노동자와 기술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기술 부문에서 일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도적으로 사역하며 시급히 조선인 기술자를 양성한다. ④친일 분자는 철저히 소탕하고 각 분야의 불순분자를 엄정하게 숙청할 필요가 있다.

할을 한 것은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 화끈한 ‘항일 무장투쟁’ 경력자는 어떤 오류라도 사면된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의열단 김원봉처럼 화끈한 ‘항일 무장투쟁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유하고 있는 인물은 김성주(후에 김일성)다. 만약 김원봉을 독립유공자 명단에 올려 놓는 일에 성공하면 다음 수순은 뻔하다. 김성주도 소위 ‘보천보 전투’ 등 화끈한 항일 무장투쟁 경력자이니 그도 독립유공자로 표창 서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놈 정신’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항일 무장투쟁을 선명하게 행했던 집단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라고 우긴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정면 부정하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을 부정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반민중·반민족·반민주의·반혁명 세력이 외세와 결탁하여 만들어낸 분단정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민중·민족·민주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불의(不義)의 체제라는 의미가 잠복해 있다.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인사들의 사상적 뿌리를 추적해 가면 한길사가 발간한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4권에 수록된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란 논문이 나타난다.

저자 최장집·정해구³⁾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지배체제는 고유의 모순 구조로 인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 요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해방공간을 혁명 대 반혁명 구도로 가른 다음 혁명세력(좌익·공산주의 추종자)은 선(善), 반혁명세력(우익·자유민주주의 추종자)은 악(惡)의 구도로 설정했다.⁴⁾

분단 반대세력은 남로당을 중심으로 미군정에 저항하기 위해 1946년 10월 대구에서 ‘10월 인민항쟁’을 벌였고, 단선단정(單選單政)을 저지하기 위해 ‘2·7 구국투쟁’, ‘4·3 제주민중무장봉기’, ‘5·8 총파업’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⁵⁾

그들은 해방 공간에서 발생한 대구폭동(1946), 제주 4·3폭동(1948), 여수순천 반란 사건(1948)은 폭동·반란이 아니라 ‘민중들의 가열찬 투쟁’이며, 이를 진압하는 행위는 ‘미군정의 폭력적 진압’⁶⁾이라고 정의했다.

6·25 남침을 “국내외적 갈등이 심화된 결과” 라고 강변

최장집·정해구는 남한에서는 미군정의 폭력적 탄압으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중들의 혁명열기가 소련군의 후원을 얻어 식민 잔재와 봉건 잔재를 척결하는 혁명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 궁극적 결과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것이다.

정해구·최장집이 쓴 논문의 결론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정의롭지 못한 반혁명 세력이 외세를 등에 업고 당시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분단정권을 수립한 ‘정의롭지

3) 이 논문의 저자는 초판본에는 최장집·정해구 공저로 되어 있었는데, 최신판에는 최장집의 이름이 빠지고 정해구 단독 논문으로 되어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판본에 의거하여 논문 저자를 최장집·정해구로 표기한다.

4) 이영훈, 「왜 다시 해방 전후사인가」,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역음,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47쪽.

5) ‘ ’ 안의 용어는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의 공동저자인 최장집·정해구가 사용한 것이다.

6) 최장집·정해구,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최장집 외 지음,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93, 27쪽.

못한' 행위라는 것이다. 반면에 해방 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반란은 단선단정을 막기 위한 의롭고 숭고한 투쟁이라고 강변한다. 해방공간을 이런 식으로 분석·기술하는 논리의 종착역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된다.

정해구·최장집은 이 논문에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인민정권을 세우려 했던 혁명세력(좌익세력)은 분단정권이 수립되자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벌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김일성의 남침이니, 스탈린의 음모가 아니라 “한국전쟁은 일제하부터 시작되어 해방과 분단과정을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던 국내적 갈등의 최종적 판가름”⁷⁾이라는 것이다.

6·25는 김일성과 박헌영, 스탈린과 모택동의 남침 전쟁이 아니라, 남한의 반혁명·반민족 정권과 북한의 혁명적·민족적 '민주기지' 정권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행위다.⁸⁾ 따라서 누가 침략을 했는가, 누가 전쟁을 일으킨 전범인가를 따지는 것은 졸렬하고 의미 없는 시간낭비 행위가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해구·최장집은 “남침이나 북침이나의 전쟁 발발 책임 문제가 과대하게 고려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전쟁은 “국내외적인 갈등이 심화된 결과이지 단지 어느 한 쪽이 총을 먼저 쏘아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우연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⁹⁾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3년에 걸친 전쟁을 계기로 혁명세력인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을 완결했고, 자립적 민족경제 정책으로 나갔다고 주장한다. 정치적으로는 단일 지도체제, 사상적으로는 자주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체사상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반면에 반혁명세력인 남한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종속적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반공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비밀 해제된 구소련 문서들로 인해 이런 주장은 완벽한 사기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구소련 문서들은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과 그 협력자들이 남쪽보다 훨씬 일찍 공산화 된 분단국가 건설에 총력전을 전개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정식 교수의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라는 논문¹⁰⁾이 그 증거다.

이정식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발굴한 사료, 러시아가 공개한 소련 기밀해제 문서, 전현수 교수가 번역한 『쉬띠꼬프 일기』 등에 의하면 해방 공간에서 한반도에 분단정권을 수립한 원흉은 스탈린과 그에 협력한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들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서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협력한 남로당 세력이다.

거짓말의 바벨탑

남북의 좌익·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소련이 지시를 받아 공산국가를 건설한 치명적 약점을 은폐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모리배로 몰아 공격했고, 국회 공작을 통해 반민법과 반민특위를 조종했다. 주자학적 세계관을 이어받은 남한의 좌파·좌

7) 최장집·정해구,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최장집 외 지음, 앞의 책, 33쪽.

8) 이영훈, 「왜 다시 해방 전후사인가」,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엮음, 앞의 책, 44쪽.

9) 최장집·정해구,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최장집 외 지음, 앞의 책, 36쪽.

10)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엮음, 『해방전후사의 재인식1』, 책세상, 2006, 13~56쪽.

익·친북·종북 세력들도 친일 프레임을 이용하여 반대자를 공격 제거했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이 친일 세력을 증오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공산세력을 파괴하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의 좌파, 좌편향 세력들이 집요하게 친일파를 공격하는 것은 식민시대의 그들 행위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 대한민국 건립에서의 그들의 지대한 공헌을 증오하는 것이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드디어는 김일성 주도하의 남북통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¹¹⁾

그래서 그들은 이북에서의 친일파 기용은 언급을 회피했다. 반대로 이북은 친일파를 완전히 소탕했다고 지금도 거짓 주장하고 있다. 친일파의 유능함과 유용성은 이북도 이남이나 마찬가지였다. 남한이 친일세력을 ‘이이제이(以夷制夷)’ 했다면 이북은 친일세력을 ‘이이호제(以夷護制)’했다. 친일파라는 적을 기용해서 그들 몸을 지키고 그들 체제를 보호한 것이다. 그것도 남쪽보다 더 노골적으로 더 높고 센 자리에 김일성이 친일파를 갖다 앉혔다.¹²⁾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한민국은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완패를 당했다. 198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학자, 지식인, 언론인, 일반인들은 만주 별판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해가며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항일 무장투쟁의 선명성과 치열성, 웅장한 기상에 꼬리를 내렸다. 또 저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 분단정권을 수립한 것은 이승만과 남한이라고 믿어버렸다.

이때부터 김일성=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주인공이자 민족의 영웅, 이승만=미국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이 친일파들과 야합하여 분단을 야기한 매국노, 박정희=일제의 주구로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가를 타도한 친일파라는 우상이 만들어졌다.

오늘날 주체사상을 받아들여 한국 사회를 종북의 소굴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온 주사파와, 좌익 운동권, 좌익 언론인, 그리고 김일성과 항일 무장 독립투쟁에 월계관을 씌워준 국사학자들 덕분에 그 우상이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로 굳어졌다.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 독립투쟁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화가 됐고, 금단 영역이 되었다.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가차없이 ‘친일’의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따라서 이 주제는 거의 종교의 영역이나 다름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거짓말의 바벨탑. 이것이 황당무계한 반일 역사관의 뿌리다.

11) 송복, ‘친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2) 송복, 앞의 자료.

■ 정책토론회

토론

- 김 상 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정 인 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조 경 업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일 갈등에 관한 토론문

김 상 검
동국대 법학과 교수

I. 굴곡진 역사 속의 한일관계

해상국가로서 일본은 오랜 역사에서 보듯이 주변 국가들의 국민을 왜구라 불리던 해적을 통하여 약탈하였다. 역사 속의 일본은 우리나라가 조선일 때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침략하여 수많은 조선인을 살상하고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하였다. 그 후 19세기 말 국제관계에 소극적이었던 조선을 침탈하기 시작하여 1910년 식민지로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할 때까지 식민지로 철저히 유린당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제1·2공화국에서 한일관계는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63년 제3공화국이 시작되면서 한일관계의 복원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1965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 한일기본조약은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하여, 1905년 을사늑약을 비롯하여 과거에 일본과 맺었던 불평등조약과 협정 등은 모두 무효가 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불평등한 한일관계는 일단 국제법적으로 정리되었다. 물론 이런 조약 하나로 역사적으로 침탈당했던 상처가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독일 스스로 밝혔듯이 한 번 전범국가라는 영원이 전범국가로 인류의 역사에 남는 것처럼, 일본 역시 전범국가로서 과거의 잘못은 영원이 인류사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이런 태도를 바꾸게 만들기도 어려워 한일관계는 발전적으로 나가기 어렵다.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침탈을 당하였다. 역사적으로 이런 비정상적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1965년 양국이 국교를 수립한 후에도 지속적인 갈등관계를 보여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통하여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국가 간의 관계는 국익이 우선 고려된다는 점에서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이 수위를 벗어난 적은 없었다.

근래에 오면서 일본의 식민지 때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확산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기저에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

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945년 이후 일본의 이런 태도를 알고 있었고, 역사를 부인하는 일본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1965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조약의 체결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다. 당시 정부가 누구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어떤 조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합의하여 체결한 이상 국제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물론 당시 국민의 반일감정이 컸기 때문에 한일국교수립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받았다.

2007년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1965년 한일회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을 보면 당시 정부가 한일회담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당시 일본과 협상으로 우리가 받은 돈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와 상업차관 3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를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받았다. 이 돈은 공식적으로는 식민지배로 인한 배상이 아니라, 경제 협력을 위한 지원이었다.¹⁴⁾

우리나라는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일청구권 중 징용된 자들의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체화하였다.¹⁵⁾ 그리고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는 개인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식민지 때의 기본적인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하여 정리되었다. 물론 이런 문제 이외에도 위안부 문제 등은 별도로 양국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발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2015년 한일간의 합의를 통하여 형식적인 여부를 떠나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 표명이 있었고,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물론 이런 일본과 협상, 재단의 설립 등에 대하여 피해자,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반대하였고, 현 정부에 와서는 재단 해산과 위안부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13)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요구했던 8개 항의 대일청구권의 대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한 금(金) 249,633kg 및 은(銀) 67,541kg, ②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 정부의 조선총독부채권 반환 청구, ③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금품의 반환 청구, ④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 청구, ⑤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청구권의 반제청구, ⑥ 한국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항목, ⑦ 전기 제 재산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과실의 반환 청구, ⑧ 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종료에 관한 항목 등이다.

14)이 배상의 근거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이다. 이 강화조약의 제14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게 입힌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냉전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진영 대다수 국가는 일본에 대한 배상권을 포기하였고, 조약체결국 49개국 중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현 미얀마), 구 월남 등 4개국만 배상금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적으로 일본과 전쟁당사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배상금 청구권자가 될 수 없었다. 더구나 식민지배 배상금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졌던 영국, 프랑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사용하기도 어려웠다.

15)징용자 수는 노무자 667,684명, 군인 및 군속 365,000명 등 총 1,032,684명이라고 산정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2018. 10. 30. 대법원은 일제 식민지 때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당연히 반발하였고, 한일관계는 새로운 갈등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이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해당 기업의 자산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한일 간의 외교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2019. 7.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수출규제에 나섰다. 발제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한일 양국은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에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의 태도에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비이성적인 반일감정에만 경도되고 있는 우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II. 세계화 시대의 이성적 외교와 국익우선원칙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는 단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너무 상처받고 피해 입은 것이 많아서 이성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일본의 잘못만 따지면서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겠다면 한일관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일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이런 현상은 아마 일본 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 후안무치한 과거사에 대한 인식 등이 크지만, 그렇다고 국가 간에 이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단교하거나 시비를 걸기도 어렵다. 일본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동일한 기준과 관점에서 대응하게 된다면 국가 간에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다.

박인환 변호사님 발제문을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 청구되었던 대일배상사건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런 판결들을 보면 국제법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접근하려는 태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에 대한 시각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반되고 있는 것은 사법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문제가 아니고 국제문제이다. 일본이 거부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관계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정부였던 국제관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이다. 외국이 우리나라 사정을 이해하여 새롭게 협상을 하자고 한다면 몰라도 과거 정부가 체결했던 협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국제법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약이나 협정을 위배한 국가가 지게 된다. 우리는 일본과 관계에서 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교관계에서 강경대응은 그만큼 정당성을 확보하였거나 국제적 지지와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상응하는 국력을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관계는 형식적으로 평등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력으로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 우위는 현실적 국제관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외교는 국익우선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46조 제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 조항은 비록 국회의원에게 부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의무라는 점에서 국익우선원칙이 중요한 헌법상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일관계에서 국익이 무엇인지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 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로지 국익우선원칙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가 정립될 뿐이다. 프랑스 국민은 독일을 영원한 원수이며 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양국은 유럽연합에 속한 회원국으로서 서로 협조하면서 경쟁하는 관계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과 관계에서 독일과 프랑스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단순한 반일감정만으로 일본에 대응할 수는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전 세계에 일본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저 우리의 반일감정을 충족시킬 뿐이다. 이 세계화된 시대에 감정은 국가외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정부도 국민의 반일감정을 부추기거나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긍정적으로 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국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발제문에서 보듯이 한일관계에 갈등이 증폭하여 악화되면 서로 불이익만 커질 뿐이다. 외교문제는 이성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하고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과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국가 간에는 일방적인 요구가 실현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식민지로 인한 피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과거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친일·반일문제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풀어나가려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과 같다. 우선 그동안 한일관계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국제법적 관점에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나 언론은 반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관계에서도 언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관계에서 어떤 관점과 기준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원한 적이라는 것과 과거 침략하여 저지른 만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국가 간에 적대시하면서 외교관계를 정립하고 나아갈 수는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없다. 외교문제에 있어서 국가기관은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에서도 이익형량의 원칙은 중요한 판단의 근거이며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일본과 맺은 협정은 준수해야 하고, 그 협정을 파기할 만큼 잘못이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잘못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반일감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한일관계도 이성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전략과 우리 산업 장기황폐화 우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토론 요약>

세계3위 경제국가이면서 GATT-WTO하의 자유로운 무역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유럽에서의 브렉시트에 이어 일본발 보호무역주의는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여 첨단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정치외교적 불만을 무역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한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불만을 이용하여 일본은 언제나 우리나라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무역보복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일본산 핵심 부품소재를 국산화로 대체하는 '탈일본화' 노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모든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다. 부품소재 국산화 더불어 무역전쟁 수준으로 국제관계를 만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 보편화된 글로벌공급사슬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과 원만한 통상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대외정책 기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본 아베 정부는 복합적/전략적 목표하에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과거사에 대한 불만을 계기로,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한국의 지위 조정(일본 정부의 2017년 '일미동맹의 재구축') 차원에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상시 공격이 가능한 무역제도를 확보하는 중이다. 이 배경에는 우리 한국산업/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와 우리 경제 흔들기 목표도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을 반대하기 위해 '의병', '죽창', '국채보상운동'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일본의 의도를 축소해석하거나, 국내 정치용일뿐이다.

일본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정도이므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반일 정서가 확산되고 일본내에서 험한 기류가 조성되어 일본의 언론과 지식인들의 반대 여론이 파문히는 사이 아베 정부는 한국 공격용 통상무기를 합법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이다. 즉, 아베 정부의 전략에 휘말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6천만달러 불화수소 한 개 품목 수출금지로 삼성과 SK의 천억달러 반도체 수출을 막을 수 있다. 백색국가 배제로 일본이 전략물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5년후 우리나라 산업생태계는 현재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을 것이고,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

년' 현상이 우리 경제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일본발 우리 경제 장기황폐화를 우려**해야 한다.

미국에게 중재 요청(트럼프 대통령)을 할 정도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의 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 비중을 뒀야 한다. 일본은 정치외교적 사안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출규제 철회를 협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대화를 요구하는데 일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 먼저 안테나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 협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8월초면 일본은 계획대로 우리 산업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규제 철회 요구를 아베 정부가 들어주기 만무하다. 허공에 고함에 지르는 꼴이고, 결국 일본은 우리 산업에게 언제든 휘두를 수 있는 기술무기화를 할 것이란 점을 전제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백색국가리스트 조정 최종 각의결정'을 연기하도록 일본에 제안하고 양국간 공식논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고 외교이다. 일본 조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발 우리 경제 장기황폐화 우려와 경로

-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심사 강화로, 우리 기업의 생산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며, **우리나라 산업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일본발 우리 경제 장기황폐화를 우려**해야 한다.
 - 일본발 우리 경제 장기황폐화 이유/경로는 아래와 같다.
 - ① 현재의 최적 생산체계에서 이탈: 글로벌공급사슬(GSC)에 따라 형성된 최적의 생산체계에서 이탈로 생산단가 인상
 - ② 재고비축 부담 증가: 수입산 소재 수입 일정이 예상가능하므로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재고를 확보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불확실성으로 장기간 재고비축 비용 발생
 - ③ 서류 작성 및 심사 등 비관세장벽 부담: 특별우대를 받으면 3년에 한번 심사를 받으면 되지만, 이제 매번 건건이 서류심사. 해당 물품이 어떤 공정에 사용되고 어떻게 판매/소진되는가에 대한 서술형 자료 제출 부담
 - * 서류심사를 통해 일본은 언제든 수출금지 명분 확보, 그것도 수입국 기업의 서류 미비를 이유란 점을 내세워 국제적 비판 회피
 - ④ 소재부품, 장비 뿐만 아니라 기술 교류, 인력교육 등에서도 한일 기업간 협력활동 약화. 즉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 중단
 - ⑤ 생산 최적화 이탈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제품조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바이어의 경쟁사로 이탈 가능성
 - ⑥ 전반적인 기업환경 악화를 견디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은 특별우대를 받는 백색국가 혹은 핵심소재 조달에 정치적 문제가 없는 국가로 이전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 ⑦ ‘무늬만’규제완화가 신산업 성장을 막고,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이 늘면서 국내에서는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 현상이 우리 경제에서 현실화될 수 있음.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문

조 경 업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일 무역분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보다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말잔치만 난무하고 있음.
 - 유시민 “이 판국에 아베 편들기? 동경 가서 살든지...”, 조국 “죽창가”, 김현종 “국채보상운동”,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 등으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음.
 - 아군과 적군의 약점과 장점을 알지 못한 무모한 용기만 가지고 벌인 전쟁은 이순신의 “명량해전”이 아닌 허균의 “철전량 전투’가 될 것이 분명함
 - 아군의 강점과 적의 약점, 싸워야할 위치와 시기, 등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준비와 지략이 세계 3대 해전으로 기록된 명량해전의 승리 원동력
 - 조선수군의 장점인 화폭 공격을 버리고 정면전투를 벌인 원균의 ‘철전량 전투’는 근접 전투에 능한 왜의 수군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투
 - 일본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주력업종과 대표기업들의 급소를 파악하고 수출규제 품목을 선택한 반면 우리는 아직 어떤 품목이 규제대상이 될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의 대한 제제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¹⁶⁾
 - ① 핵심 산업의 산업용 원료와 기술 반출 제한 → 화이트 리스트 제외 (1,115개 품목 대상)
 - ② 무비자 입국 및 취업생 입국 제한
 - ③ 수입관세 관세 인상
 - ④ CPTPP 한국 참여 거부
 - ⑤ 금융제제¹⁷⁾ - 한일 은행간 크레딧 라인(신용공여) 차단, 일본 보유 한국 기업 주식(약 12조원) 의결권 행사, 일본이 계획 했던 한국 투자 계획 철회
 - ⑥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차압
 - ⑦ 국교단절

16) 이병태 TV “ 일본의 경제제재는 언제부터 준비되었나?”.

17) [동서남북] 김태근 “현실을 알고 큰 소리쳤으면...”, 조선일보 2019.7.16.

- 한일 무역분쟁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에게 나아가 싸울 때가 아니라 와신상담할 때라는 것을 알려야 함.
- 한일 무역분쟁은 과거의 수많은 무역분쟁에서 보았듯이 양국 모두 손해가 되고 3자가 반사이익을 얻는 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 : 2만 여개 품목에 평균 56% 관세부과 - 세계적인 보호무역전쟁 - 대공황 심화
 - 미국-프랑스-독일 치킨 전쟁(1960) : 미국산 수입산 치킨에 관세부과 - 미국 가금류 산업 타격 - 프랑스 및 독일산 수입 경자동차(폭스바겐 버스 포함)에 25% 보복관세 부과 - 도요타, 이슈즈 등의 경트럭 생산 및 대미국 수출 증가
 - 미일 관세전쟁(1987) : 레이건 행정부 3억 달러 상당의 일본산 반도체, 컬러TV, 컴퓨터, 자동차 등의 가격이 2배가되도록 관세 부과(미국 소비자 530억 달러의 수입관세 부담) - 일변 맞대응 대신 자발적 수출규제를 도입(일본 자동차 3% 수출 감소) -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 계기
- 한일 무역 분쟁이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화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여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려는 분쟁으로 치닫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큼
 - 통상적인 가격규제, GDP 손실 크지 않음
 - 중간재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물량 확보가 가능하면 원가절감/기술개발을 통해 대응 가능
 - 가격규제 → 중간재화 가격 상승 → 수출경쟁력 약화 → GDP 손실 0.15% ~ 0.22%
 - 반도체 독점적 지위(시장점유율, D램 71.8%, 낸드 플래쉬 41.6%) → 생산단가 상승 → 제품가격 상승 → 수요대체 낮음
 - 한국의 반도체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경우, GDP 손실 0.07% ~ 0.09%
 - 3개 소재 부족분이 곧 생산중단과 동일
 - 생산 중단 → 공급 체인 붕괴 → 참여 기업 퇴출 → 새로운 경쟁 기업 시장 진입하여 대체
 - 3개 소재 총 수입액 3억 8천 5백만 달러, 30% 부족(1억 1천6백만 달러) → 반도체 생산(141조원)의 30% 감소
 - 공급망 붕괴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 GDP 2.2% 감소

- 보복을 할 경우 한국의 GDP도 일본의 GDP 감소폭만큼 감소하는 죄수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복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 요구됨
 - 한국이 보복할 경우, 일본의 GDP가 1.2% 감소하여 보복에 따른 감소효과가 1.2%p에 달할 전망
 -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를 가지고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수출규제를 이용한다면 양국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 중국이 한·일 무역 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며, 특히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중국의 시장지배력은 크게 향상될 전망
 - 미국의 GDP 증가는 0.03%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하여 한일무역 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
 - 한일 양국의 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할 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 한일무역 분쟁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자유 시장경제 블록」과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세대결 양상으로 치달는 상황에서 한일무역 갈등은 한·일양국은 물론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

- 금융분쟁으로 확대되면 외환위기 가능성 고조
 - 2018년 말 대일본 부채 833억 달러로 대일본 자산의 2.1배에 달하고 2017년에 비해 27억 달러 감소
 - 대일본 금융부채, 총 금융부채의 7.5%를 차지, 직접투자는 21.4%로 EU(36.5%), 증권투자 206억 달러, 현금 및 예금 등 기타 투자 89억 달러
 - 한국 기업의 해외공장에 제공한 대출은 미 반영된 상황
 - 일본의 금융제재, 국가 및 기업 신용도 하락
 - 한국 기업의 해외공장에 제공한 대출
 - 급격한 자본유출 & 자본조달 비용 급상승 → 외환위기
 - 일본(기축통화국), 엔화표시 국채 & 회사채 발행 가능, 엔화 수입 결제 가능
 - 외환보유 4,037억 달러('18년 12월) 충분 한가?
 - BIS 기준, 적정 외환보유액 4,679억 달러(오정근, 2018)
 - 통화스왑, 1,270억 달러
 - 금융제재, 자금이탈 및 조달비용 급증, 외환위기 촉발

<표 1> 지역별 대외금융 자산 및 부채 현황 (억 달러, %)

	금융자산		금융부채	
	총액	일본	총액	일본
2018년말	11,168	389	11,075	833
(A)	(100.0)	(3.5)	(100.0)	(7.5)
직접투자	3,876	77	2,314	496
	(100.0)	(2.0)	(100.0)	(21.4)
증권투자	4,557	214	6,682	206
	(100.0)	(4.7)	(100.0)	(3.1)
파생금융상품	200	9	277	14
	(100.0)	(4.5)	(100.0)	(5.0)
기타투자)	2,535	89	1,802	118
	(100.0)	(3.5)	(100.0)	(6.5)
2017년말	10,724	371	11,999	860
(B)	(100.0)	(3.5)	(100.0)	(7.2)
증감(A-B)	444	19	-924	-27

자료: 한국은행

- 국산화의 출발점은 국내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과 반기업·친노조 정책수정
 - 국산화와 수출입 다변화는 한일 무역 분쟁과 상관없이 항시 추구해야 할 과제
 - 한일무역 분쟁이 국산화를 촉진할 거라는 기대는 최상의 기업들이 모여 형성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 부족
 - 반기업·친노조 정책수정,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 중단, 규제 혁신 추진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36, 고려아카데미텔

Tel : 02-741-7660~2

<http://www.cubs.or.kr>